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 항 시 설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윤덕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의 객관성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
현행 지방항공청장에 위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
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삭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
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항시설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소속기관과 사전협의 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제61호카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, 제3호, 제6호부터 제21호까지,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, 제30호,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.	제5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0. (생략)	1. ~ 60. (현행과 같음)
61. 항행안전시설(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은 제외하되, 타목, 거목 및 너목에서는 포함한다)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	6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~ 차. (생략)	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
카. <u>법 제47조제2항에 따른</u>	<u><삭 제></u>
<u>검사</u>	
타. ~ 러. (생략)	타. ~ 러. (현행과 같음)
62. ~ 67. (생략)	62. ~ 6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357